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보건복지위원회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 검 토 보 고

■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82호)

2025.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1.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82호) ..... | 1 |
| II . 검토의견 .....                          | 4 |



## I. 개요

### 1.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82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교홍의원·정점식의원 등 115인
- (2) 제 안 일 : 2025. 9. 10.
- (3) 회 부 일 : 2025. 9. 11.

#### 나.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며,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하며, 이에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자살 예방 정책 우선순위 지정 및 법제도 개선

국회와 정부는 자살 예방을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생명존중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지역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 2. 자살 예방 사업 재원 확보 및 확대

자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GDP 대비 최소 0.05% 이상(2025년 기준 약 3,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 자살예방센터 확대 설치, 위기 개입 프로그램 운영에 우선 투자한다. 특히, 자살고위험군(고령층, 청년·청소년, 취약계층 노동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전용 지원 예산을 신설한다.

## 3.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신설과 통합 관리

자살예방을 위해 여러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총괄·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조속히 신설한다.

## 4. 자살 위기 조기 발견 및 상담 접근성 강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 위기 징후 인식 및 정신 건강 문해력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와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과 같은 디지털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상담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국어 및 청각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다.

## 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적 위상을 자랑하지만,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3명, OECD 평균 10.6명)을 기록하며, 국민의 정신 건강 보호가 시급한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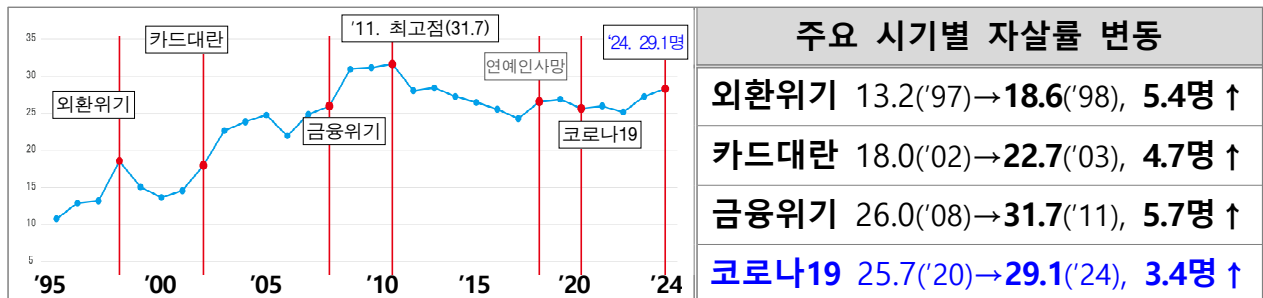
이는 자살을 개인적 문제로 간과하고, 체계적인 법·제도 정비와 재원 투입이 부족했던 점에서 비롯된다. 이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이에 국회와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모든 국민이 희망과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

## II. 검토의견

- 우리나라의 2024년 자살사망자는 총 14,872명으로서 일 평균 40.7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자살률<sup>1)</sup>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년 자살률이 18.6명이었으나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인 2024년에는 자살률이 29.1명까지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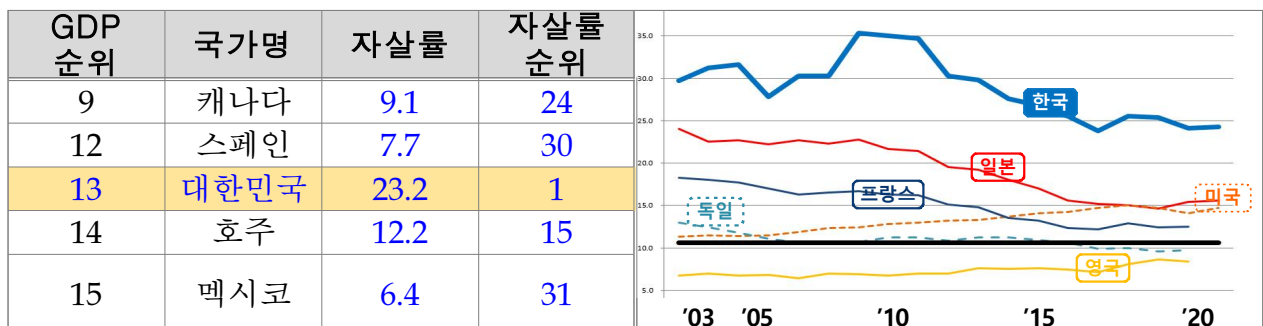
<연도별 자살률과 주요 시기별 자살률 변동>



\*자료: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과 비교해 보아도 국가 간 비교를 위한 우리나라의 연령표준화 자살률<sup>2)</sup>은 23.2명으로서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고, OECD 회원국 평균(10.7명)과 대비하여도 2.2배 높음.

< 주요국 자살률 순위(左) 및 자살률 추이(右) >



\*자료: 보건복지부, OECD.STAT, Health Status Data('25.7.추출)

1) 인구 10만명 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말함.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OECD 기준 인구를 활용한 기준임.

□ 이렇게 심각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자살 고위험군 발굴·지원,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자살예방센터<sup>3)</sup> 지원,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sup>4)</sup> 활성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sup>5)</sup> 운영,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2. 6. 10.>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8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의 예방과 국민의 자살예방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용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자살과 관련한 보도 또는 방송에 연이어 제2항에 따른 홍보영상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 상담번호 안내를 송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청년 소외계층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등을 계속 수행할 예정임.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세부 내용>

| 구분                             | 내역사업                                                                                                                                                                        |
|--------------------------------|-----------------------------------------------------------------------------------------------------------------------------------------------------------------------------|
| 자살<br>고위험군<br>발굴·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li> <li>- 자살유족 발굴·지원</li> <li>- 심리부검<sup>6)</sup> 체계 구축</li> <li>-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li> </ul>                   |
| 자살예방사업<br>운영 및<br>자살예방센터<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사업 지원</li> <li>- 자살예방정책 연구개발 및 운영</li> <li>-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li> <li>-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li> </ul>                            |
| 자살예방교육<br>및 홍보<br>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존중문화 조성 공익광고 및 인식개선사업</li> <li>- 자살예방교육 및 강사 양성교육</li> <li>-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li> </ul>                                         |
| 한국생명존중<br>희망재단<br>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li> </ul>                                                                                                 |
| 자살예방<br>상담전화<br>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 상담전화 1센터(보건복지부 직영) 운영 지원</li> <li>- 자살예방 상담전화 2센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 지원</li> <li>- SNS(카카오톡, 문자, 애플리케이션) 사이버상담체계 운영 지원</li> </ul> |
| 청년<br>소외계층<br>온라인 돌봄<br>시범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은둔청년 주기적 대화창구 서비스 제공</li> </ul>                                                                                                 |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 결의안은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여전히 높고, 자살률이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여 자살예방 정책을 국가 정책 중에서도 우선 순위에 두고, 이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천명하며,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임.

□ 결의안을 주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자살 예방 정책 우선순위 지정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하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자살 예방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표준화된 운영 기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매년 시·도, 시·군·구 자살예방사업 운영 기준을 담은 ‘자살예방사업 안내<sup>7)</sup>’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은 적용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살예방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자살 예방사업 재원 확보 및 확대 관련하여 결의안은 GDP 대비 최소 0.05% 이상, 2025년 기준으로는 약 3,3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자살 예방 예산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계획액 587억원<sup>8)</sup>의 5.6배임.

7) ‘2025 자살예방사업 안내’는 1장 국가 자살예방사업의 정책 방향 수록과 자살예방사업 전달체계 현황 안내, 2장 국가 주도 자살예방사업의 주요 전략 및 방향성 안내(예방·개입사후관리), 제3장 시도

8) 지방비 207억원을 포함하면 총 794억원임.

## <최근 3년 및 2026년(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계획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 2023   | 2024   | 2025   | 2026(안) |
|-----|--------|--------|--------|---------|
| 사업비 | 48,847 | 50,817 | 58,730 | 70,797  |

\*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2024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는 2,556조 8,574억 원으로서 0.05%는 1조 2,784억 원이고, 결의안에서 제시한 약 3,300억 원은 2024년 정부 총지출 규모인 656조 7,000억 원<sup>9)</sup>의 약 0.05%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보임.

□ 셋째,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신설과 통합 관리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성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sup>10)</sup>’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2025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고 현재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연내에 신설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 넷째, 자살 위기 조기 발견 및 상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서 전 국민 대상 자살 및 정신건강 문해력 강화 교육 의무화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sup>11)</sup>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

9) “2024나라재정(기획재정부 발간, 2024.2.5.) p. 50.에 따르면, 2024년 총지출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438.3조원, 기금 218.4조원을 합한 656.7조원임.

10) 2025.9.12. 작성되었고, 정부는 자살률을 2024년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를 목표로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노동 분야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교육부는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여성·가족 중심의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력을 통한 자살예방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결의안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자살예방 상담전화(109)<sup>12)</sup> 및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sup>13)</sup>의 24시간 상담 인프라 구축은 이미 구현되어 상시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다국어 서비스 제공은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로서 고도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육성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양성 과정이나 다국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량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청각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는 수어상담 도입을 위한 비대면 화상상담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텍스트 기반의 자살예방 SNS(마들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

12) p.15. 참고1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운영 현황 참고

13) p.16. 참고2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 운영 현황 참고

**< 결의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 >**

| 지자체       | 결의안에 대한 의견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 <p>○자살은 특정 부처, 부서의 노력만으로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어려운 문제이고 인구가 작은 기초 지자체는 한 명의 자살 사망자로도 전체 자살률에 끼치는 영향이 큰 측면이 있음도 고려해야 함.</p> <p>○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를 위한 국비 차등 지원 등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전담인력 인건비 등 필수 경비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보장 체계가 필요함.</p> <p>○자살시도자를 위한 8주간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밖에 표준화된 접근법이나 상담기법에 대한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함.</p> |

문 의 처

02)6788-5496

## 참고 1

##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운영 현황

### □ 사업 개요

○ (추진목적) 일반전화상담과 달리 정보제공, 안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전화상담을 통한 위기신호 조기발굴 및 자살예방 추진

○ (법적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전문상담전화(109)을 운영, 24시간 응대체계 구축하여 상담 및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추진

- 쉽게 떠올리고, 119와 같이 긴급성을 담은 전화번호로 변경(1393→109)하며 자살예방 통합 상담 전화번호 개통('24.1.1~)

\* ① 하나의 생명도 + ② 자살 Zero + ③ 구하자 빨리라는 의미



### □ 추진 현황

○ (업무체계) 보건복지상담센터 내 자살예방상담팀\* 운영 중

\* 상담사 정원: ('21) 26명 → ('22.) 57명 → ('23.) 80명 → ('24) 100명

\*\* '25.10월 중 생명존중희망재단 내 2센터 개소 예정

○ (상담수요) 통합·개편('24.1.1~) 후 크게(46.6%) 증가하였으며 '25년에도 지속 증가\* 추세

\* 월 평균 인입량 18,304건('23) → 26,843건('24) → 28,034건('25.1~3월)

## 참고 2

##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 운영 현황

### □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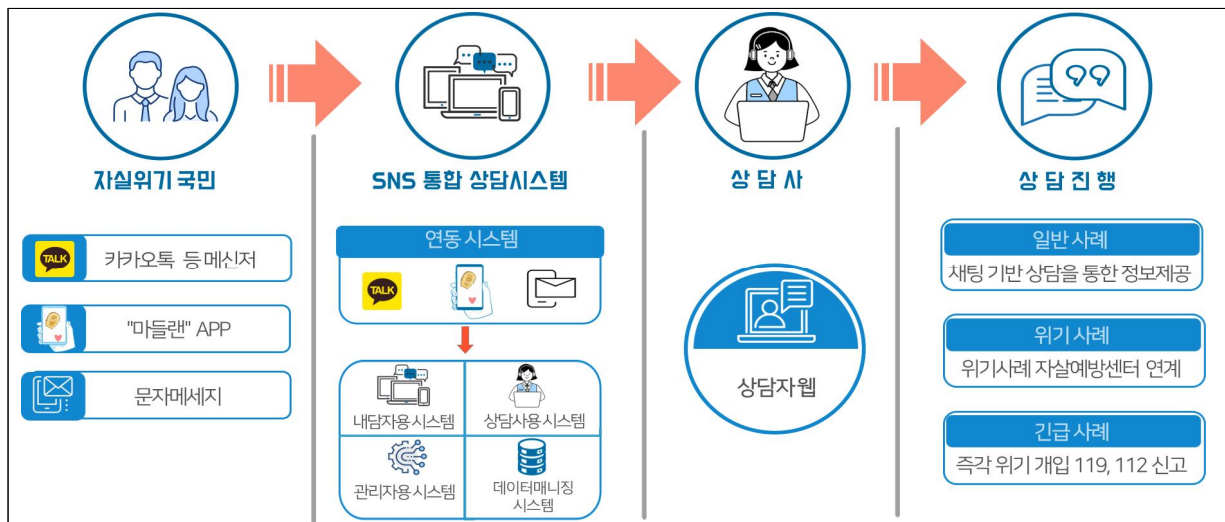
- (추진목적)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며 텍스트 대화에 익숙한 청년층의 높은 자살률\* 등을 고려하여, SNS 상담 “마들랜”\*\* 도입

\* 10대~30대 사망원인 중 자살이 1위 (‘23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댄임을 뜻어주는 댄션 친구 라는 의미(‘24.5월 브랜드 네이밍 공모전 결과)

- (주요내용) 민관협력\*으로 ①메신저, ②문자메시지, ③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상담시스템 “마들랜” 구축 및 개통(‘24.9.10~)

\* 보건복지부(기획·총괄 관리)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정보시스템 개발·운영) + 생명존중희망재단(상담 인력 채용·관리)



### □ 추진 현황

- (업무체계) 생명존중희망재단 내 SNS 자살예방상담팀 운영 중

- (상담수요) 월 평균 2,719건(‘24.10 ~ ‘25.8월)으로 지속 증가\* 추세

\* 월평균 상담량 : 2,197건(‘24.10월) → 2,297건(‘24.11월) → 2,150건(‘24.12월) → 2,401건(‘25.1월) → 2,630건(‘25.2월) ⇒ 2,959건(‘25.7월) → 3,101건(‘25.8월)